

#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1. 개정이유

-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신고·승인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등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위임하되, 제7항(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이 직접 이를 사전 승인하도록 함. 단, 임원의 외부강의등 신고는 이사장에게 행하 되,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도록 함(강령안 제30조 제3항 제 4호)

## 3. 의견제출 관련사항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주 소	
연락처	
의견내용	
의견제출의 근거	

※ 의견제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로 의견 제출시, 담당자 연락처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20년 07월 24일(금) 15:00

#### **4. 접수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 접수부서 :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
- 담당자 : 차 경 희, 김 태 환
- 연락처 : Tel : 02-2290-7135  
Fax : 02-2290-6442  
E-mail : chagh@sisul.or.kr, taehwan@sisul.or.kr

**붙임 :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1부. 끝.**

#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제안요지)

## 1. 개정이유

-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신고·승인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등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위임하되, 제7항(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이 직접 이를 사전 승인하도록 함. 단, 임원의 외부강의등 신고는 이사장에게 행하되,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도록 함(강령안 제30조 제3항 제4호)

##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2) 규정 심사결과, 반영하였음

라.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제4호 중** “제21조에서 규정한 이사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다만 임원의 신고, 사전승인 사항은 제외한다.” 을 “제2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이사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단 외부강의등의 참석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원이 외부강의등을 이사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 <p>①~② (생략)</p> <p>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3. (생략)</p> <p>4. <u>제21조에서 규정한 이사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다만 임원의 신고, 사전승인 사항은 제외한다.</u></p> <p>4. &lt;신설&gt;</p> <p>5. (생략)</p> <p>④~⑤ (생략)</p>	<p>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lt;삭제&gt;</p> <p>4. <u>제2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이사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단 외부강의등의 참석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원이 외부강의등을 이사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5.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